

고성군공설화장장및공설납골당시설위탁동의안

(의안번호 제680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. 3. 14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1. 3. 16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1. 3. 26

총무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위탁사유

-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관리를 위탁하여 경제적인 시설관리를 꾀함은 물론 전문적인 운영으로 경영혁신을 통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묘문화 개선에 기여코저 위탁코자 함.

3. 주요골자

-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정함.
- 위탁업체 선정에 위한 수탁자의 자격요건 마련
-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운영 능력, 전문성 등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능력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, 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함.
- 민간위탁 학술용역결과(원가계산)에 의거 예정가격 작성하여 입찰 또는 수의계약
- 시설물의 무상사용 및 위탁비용지급 등 위탁조건 명시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과 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사료되나

- 입지적여건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과 위탁 운영에 따른 장·단점과 예산절감 및 인력운용 효과, 시설 관리 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해야 할 것이라 하였음.
- 참고로 위탁운영 비용과 직접운영 비용차이는 미미하나 정부의 정책이 민간위탁 관리시키는 방향이고 현 여건상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관리를 일용직 공무원이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임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관내에 민간위탁대상 적격자가 있는지와 도내에서 민간위탁을 실시하는 시·군이 있는지
- 답 : 관내에도 수탁자의 자격요건에 적합한 개인이나 법인이 있으며, 도내에서도 진주시를 비롯한 여타 시·군에서 민간위탁시키고 있는 추세임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2001. 3. 26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